

[]설계업 []감리업 법인합병 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1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신고인	합병된 법인	상호 (전화번호:)	
		대표자	생년월일
		등록번호	소재지
	합병된 법인	상호 (전화번호:)	
		대표자	생년월일
		등록번호	소재지

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	상호 (전화번호:)	
	대표자	생년월일
	등록번호	소재지

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·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[]설계업 []감리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합병 전 법인

(서명 또는 인)

합병 후 법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고	수수료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26조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한 금액
------	-------	---

첨부서류

1.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1부
2.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「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(해당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합니다) 각 1부
3.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
4.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
5.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
6. 설계·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